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김민정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Ⅰ.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지금껏 수사기관과 범죄 관련 분야 지식인이 사건을 명명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대로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직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형사사법 관련 지식인과 권력의 권위에 대항하여 맞섰다. 여성의 피해를 '약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해하는 형사사법의 헤게모니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사건이 '여성이기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혐오'가 주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술 취한 이들의 까닭 모를 시비와 화풀이, '슴만튀' 등 모르는 이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을 떠올렸다. 남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택시를 탔을 때, 혼자 있는 곳으로 배달음식을 시킬 때 괜스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고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꾸민 행동을 하는 자신들의 수행에 대해 발화하였다. 이 행위들이 여성으로서 체화된 두려움임을 알렸다.

그러나 형사사법 권력과 범죄학 관련 지식인은 여성들의 '여성혐오' 발화를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 또는 증오 감정으로 이해하여 '묻지마 범죄'와 여성혐오를 양립불가능한 문제처럼 규정하였다. 이후로 지금까지 묻지마 폭력을 포함한 길거리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벌어진다. 사건의 사회적 원인으로서 여성혐오적 남성 연대 문화를 아무리 지적해봐도 이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단지 정신질환자나 괴물 같은 가해자 개개인의 돌출행동 때문이라는 대답만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

Ⅱ. '묻지마 범죄' 내 여성혐오

90년대 후반 '묻지마' 라는 용어 자체가 언론에서

처음 쓰인 이후, 언론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방화', '묻지마 범죄' 등 "묻지마"로 이름 붙여왔다. '묻지마'와 폭력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범죄 대상인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어디서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괴물'과 같은 가해자 개인만 부각되었다. 2012년 여름 모르는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폭력이 1주일 내 2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묻지마 범죄'와 꾸준히 마주해 온 시민들은 이 범죄 유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곧 검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 용어를 정책적으로 공식화하였다.

검찰이 학계에 '묻지마 범죄' 연구를 맡기면서, 법학, 사회학, 범죄학계에 두루 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심리학계에만 연구를 발주하였다는 점은 '묻지마 범죄' 연구의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가늠하게 한다. '묻지마 범죄'가 아닌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범죄의 사회적 맥락, 피해의 사회적 맥락, 젠더 권력, 계급 차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문제, 정신질환, 사이코패스 성향 등으로 범죄 원인을 설명하도록 연구가 설계되었다. 우리가 현재 지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념이 '묻지마 범죄자=정신질환자 또는 사이코패스'라는 등식으로 구성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묻지마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를 설명하려 했지만, 가족과 단절된 하위계층의 정신질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편향적 개념이다(김민정, 2017). '묻지마 범죄'의 사례들은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만이 포함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질환 혐오 정서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확산한 '묻지마 범죄'[1]는 여성혐오 또한 내재하고 있다.

검찰과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성폭력이 배제된다(대검찰청, 2013). 강간을 포함하는 성폭력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아무런 잘못 없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범죄 피해의 전형이지만, 범죄에 관한 지식과 정책을 설계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모르는 이에 의한 성폭력은 연구되고 설명될 만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강간이 힘과 권력, 지배를 확인하려는 행위이자 여성 전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테러라는 사실은 1970년대부터 강조되어 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는 오랫동안 이를 가장의 소유물인 여성의 처녀성을 훔친 재산상의 범죄 혹은 가해자의 성욕, 짓궂은 장난, 어리석은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다루어 왔다. '묻지마 범죄'를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젠더폭력의 유형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의 성별성을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

1)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점화된 여성혐오 vs. '묻지마 범죄' 논란 이후 검경 및 학계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이므로 여성혐오를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묻지마 범죄'라는 논리를 전개한 이후 조현병과 범죄를 연관 짓는 기사가 전년대비 20배 이상 증가하였다(김민정. 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33(3), 33-65 참조).

해자는 50% 정도이며, 여성 가해자는 약 5%이다(대검찰청, 2013).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 비율 혹은 남성 비율이 아니다. '묻지마 범죄'가 지닌 여성혐오적 성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여자니까, 여자는 맞아도 되니까, 여자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라는 가해자의 진술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검찰과 학계가 연구하고 공표한 '묻지마 범죄'에 포함된 사례들에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평소 여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경찰청, 2016; 「한겨레 21」, 2016.5.31.에서 재인용)",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노인들은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죄송스러워서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고 남자는 겁이 나서 제외하였으며, 약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대검찰청, 2015)", "계집년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대검찰청, 2015)", "내가 돈이 없어 같이 살 여자가 없으니, 여자가 다 싫다(윤정숙 외, 2014)" 등의 가해자 진술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사건들에서 발견된다. '남자니까, 남자는 맞아도 되니까, 남자를 기다렸다' 라는 진술이 목격되는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를 분석하고 이 개념을 공식화한 주류 범죄학과 형사사법권력은 그들이 남성중심성으로 인해 젠더권력 구조로서의 여성혐오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 분석은 사회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하는 정신질환자의 길거리 폭력만을 샘플링함으로써 이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꼬리자르기'하였다. 주취 폭력 중에서도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유독 '묻지마 범죄'에 분석에 포함되었다. 범행 직전 피해자와 가해자간 갈등이라는 명확한 범행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층의 정신질환자인 경우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것이다. 우리가 '묻지마 범죄' 혹은 '묻지마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길거리 폭력은 이렇듯 젠더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계급 구조의 문제를 탈각한 채 가해자 개인만을 문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Ⅲ. '사이코패스'와 '묻지마 범죄자'

사회 구조 및 문화의 맥락을 삭제한 채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이용하여 가해자 개인만을 문제시함으로써 여성혐오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가시화시키는 효과를 낳기 위해 가해자에게 손쉽게 붙이는 또 하나의 꼬리표는 '사이코패스'이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심각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사이코패스'라고 의심한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의 단기적 만족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기는 하지만, 잔인하거나 흉포한 범죄자가 반드시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다. 학자 중에는 법에 '걸리지' 않은 사이코패스를 '성공한' 사이코패스로 칭하기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 굳이 형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타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쉽게 쟁취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상상하며 정치인, 기업가들 중에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성공한' 이들이 법의 그물망에 걸려들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에, 우리 머릿속에 '잔인한 범죄자=사이코패스'라는 등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은 여성을 주 범행대상으로 한다.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지만, 일반 시민이 사이코패스라고 인식하는 조두순 역시 여아를 성적으로 도구화하여 잔인하게 억압하였다. 1)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2)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3)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손쉽게 이용하는 특성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현되는 경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비난하고 '건강한' 사회로부터 잘라내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묻지마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강'하다고 간주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여성을 몸뚱이로 객체화시키고(상대방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여성이 체화하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며(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남성의 성적 쾌락, 본능, 만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억압하고 이용하는(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손쉽게 이용하는), 혹은 이를 허용하는 이 사회는 우리가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다.

한 성이 다른 한 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제적으로 취하고, 제멋대로 이용하고, 웃음거리로 삼는다. 그들은 그녀들도 원했다거나, 그녀들이 먼저 꼬셨다거나, 그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녀들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피해자와 제3자를 조종한다. 참고로, 이러한 말들에서 보이는 '과도한 자존감'과 '능숙한 자기 합리화', '타인 조종' 또한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성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형사사법기관에서 또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때 하는 진술이다.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흔히 이용하는 클리쉐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 같은 주장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 양쪽의 입장을 듣는 공정한 판사, 이들을 수사하는 경찰, 이를 보도하는 언론, 이를 보고 듣고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비슷한 생각을 한다. 같은 문화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모두는 여성을 사고하고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회주류담론(예, 강남, 정치인, 일본, 성소수자 등에 관한 생각과 태도)을 공유한다. 소라넷, N번방, 불법촬영, 단톡방 성희롱 등 여성을 도구화하고, 이를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이들을 문제 삼는다. 이 사회가 구성하는 남성성이란 우리가 평범하고 '친사회적'인 우리 자신과 구별하고 싶어 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꼭 닮아있다. '묻지마 범죄' 연구가 그랬듯이. 여성에게 이 사회는 사이코패스이자 '묻지마 범죄자'에 가깝다.

Ⅳ. 구분짓기와 남성성의 위계

우리가 떠올리는 매우 흉포한 범죄자인 사이코패스는 '묻지마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내에서 하층 계급에 위치한 동시에 남성사회의 위계 내에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찌질이'적 위치에 서 있다. 이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유독 더 여성을 싫어하는 것일까? 정신적/지적 결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이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장애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행위라는 결과 사이에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이 존재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이들의 사건 기록들을 보며 내가 알게 된 바는, 이들은 장애

로 인해 깊이 있는 사회적 교류가 매우 제한되었고, 당연하게도 학교, 군대 등 남성성을 훈육하고 체화시키는 기관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중도 탈락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 즈음에서 이들은 남성 동성사회로부터 더더욱 단절되어 있었다.

가족, 학교, 군대, 직장에서 문화를 공유하며 강화되는 남성 간의 연대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남성다움의 증명이란 대부분 '여자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자란 이러이러하다(예, 감정적이다, 약하다, 잘 삐진다, 수다스럽다, 수동적이다 등등)"라는 여성성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과 반대되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본인이 '남성'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 연대가 구성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타자화된 여성이며, 이 곳에서 타자화된 여성들은 성적으로 도구화되고 대상화된다. 남성연대 문화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쾌락 및 만족을 위해 필요한 물건/동물로서 비유하고, 그와 같이 다루고, 여성이라는 존재에 공감하지 않기를 체화하면서 여성 일반에 대한 사이코패스적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남성연대에는 사실 남성들에게 인정받는 더 남자다운 남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고 리더십이 있으며 부유하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이들이 남들의 시선을 받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이 지닌 여성혐오가 덜해서가 아니라, 이를 공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고급' 남성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고급' 남성성을 획득한 이들조차 젠더폭력을 흔히 저지른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사실 모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젠더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는 관계 혹은 가까운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거나 때린 이들은 '너무 사랑해서', '맘에 들어서', '나를 거절해서', '홧김에', '술김에' 등등으로 범행 이유를 포장할 줄 알고, 이는 '치정'이나 '우발적'이란 용어로 치환되며, 법정에서 그럴듯하게 수용된다.

그렇다면 길거리 여성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사회에서 소외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향해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른다. 다른 계층의 남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쉽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여성이 거의 없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은 남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성 타자화, 여성 도구화, 여성 대상화로 구성되는 남성성 '기초반'은 습득했지만, 남성 위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여 학교, 군대, 직장에서 배제되었기에, 남성성 '심화반' 학습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이들 범죄자들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여성을 때리거나 강간하는 것이 남성 전반의 위신을 깎는다는 점을 학습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 "남자 망신 다 시키네"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손쉽게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믿음,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태도는 남성 사회로부터 소외된 남성 계층이 그들 자신을 소외시킨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은, 단 하나 남은 권력이다.

V. 형사사법 체계와 학문의 남성중심성

젠더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범죄의 개인화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행위자와 연구자는 인권과 사회 상규,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독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양육강식의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운운한다. 가해자가 '여성을 기다렸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지식과 권력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신체적 약자라 범행대상으로 '선택' 되었다며 가해자와 그들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같은 가해자 중심성, 남성중심성은 범죄학의 발달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범죄 가해자, 이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형사사법체계 실무자, 이들을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전통적으로 범행 '대상', '객체'로서만 취급받아왔다(Belknap, 2001). 범행의 대상인 객체는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며,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사회의 남성중심적 주류 문화를 내재화한 개인으로서의 연구자, 실무가들은 여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맞거나 죽어도 싼 여성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폭행하고, 성적 도구로 삼아 짓밟는 이들 역시 남성중심적 주류 문화를 체화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없다. 이들은 한 성이 다른 한 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사회의 젠더체계를 문제 삼지 않으며, 왜 하필 여성인가에 대해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혐오에 근거한 젠더폭력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중심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범죄학 담론은 여성혐오의 문제를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치환하여 여성혐오의 스펙트럼 우측 최극단만을 잘라내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와 구별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의 문제를 탈각시킨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학계와 언론은 "범죄를 명명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영미권의 백인남성중심적 주류 이론만을 검증하고, 여성들의 '여성혐오'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FBI의 혐오범죄 여부로 응답하는 서구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 연구가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강하게 내포한 편향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식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둔갑하여 사회 내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강화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과학적 가설 및 이론의 문화적 테두리와 그 전제, 연구자의 위치까지 고민하는 '강한 객관성'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본다면, 범죄와 사회 구조,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것이다.

VI. '묻지마' + '범죄' 버리기

길거리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어김없이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벌어진다. '묻지마 범죄'가 가치중립적이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연구윤리 및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비과학적 개념임을 감안할 때 언론과 학계에서 이 용어의 사용 및 적용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길거리 여성 폭력만을 여성혐오범죄로 부르는 경향을 보인다. 길거리 여성 폭력 발생의 주원인을 여성혐오로 분석하고 지적하는 용어이기는 하지

만 '묻지마 범죄'와 함께 논의되면서 이와 대치되는 개념인 듯 '여성혐오'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의미가 축소될 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수많은 젠더폭력(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가스라이팅, 성매매, 창녀 프레임, 피해자다움 강요 등등)을 여성혐오와 관계없는 것으로 사고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젠더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칭하며 그 원인으로서 사회구조로서의 젠더권력 차이,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개념인 만큼 여성을 멸시, 무시,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모두 "여자니까 별 수 없지" ↔ "여자니까 맞아도 싸." ↔ "여자니까 맞아야 해." 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스펙트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혐오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우는 낯선 이에 의한 길거리 폭력 범죄 내에 여성혐오가 주원인이자 맥락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여성혐오가 주원인인 수많은 젠더폭력 내에 낯선 이에 의한 길거리 폭력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논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성들의 지속적인 발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결과로서 변화의 모습이 더디게 체감될 지라도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쉽게 당하는 폭력,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그 폭력으로부터 두려워하며 시간과 돈 에너지, 신경을 쏟는 일상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검경과 법원, 범죄학자들은 심각성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폄하하기도 하고, 알게 될까봐 두려워 피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만큼, 계속 이야기하고 소리 내면서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민정(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33(3), 33-65.
대검찰청(2013),『묻지마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_____(2015),『묻지마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Belknap, Joanne(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2nd ed.). Belmont, CA: Wadsworth.
「한겨레 21」, 2016.5.31., "'여성'이라는 죽을 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07.html, 검색일: 2017.5.8.